

December 2020

2020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의결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2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으며, 수출입 기업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유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관세 조사 등 결과에 따라 세액을 수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 착오·경미한 과실·기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 발급을 허용하는 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을 완화하고자, 수입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관세법 상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나 과세자료 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기획재정부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수입자의 단순 착오·경미한 과실·기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 발급이 허용되도록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세 조사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규정 현행 유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납세자가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유인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1월 30일(월요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인정 곤란 사유는 특정한 차이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 유지됩니다.

또한 수입물품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하게 하거나, 무신고·과소신고 시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신설조항도 모두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Contacts

Young-Mo Lee

Partner

+82-2-3781-3140

youngmo.lee@pwc.com

Seong-II Kwon

Executive Director

+82-2-3781-0178

seongil.kwon@pwc.com

Jung-Hwan Paek

Director

+82-2-709-4089

jung-hwan.paek@pwc.com

PwC 관세법인 뉴스레터는 PwC 관세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PwC 관세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PwC 관세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